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9. 25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9월 9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9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.(안 제2조)
-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.(안 제3조)
 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 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
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 4.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.(안 제4조)
 -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.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